

초저출산 농촌지역의 자녀필요성 결정 요인 분석 청도군 기혼여성 사례

김나영*

Keywords

자녀필요성(need of children), 저출산(low fertility), 청도군(Cheongdo-gun)

Abstract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of South Korea was 2.82 in 1980 and, since then it had decreased continuously. It worsened after experienc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s a result, TFR recorded 1.076,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in 2005. Moreover, the fast decline of TFR makes it hard to find a suitable solution to raise TFR. S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various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but they have not showed satisfying results. Therefore, to find more fundamental factors which affect TFR, this study analyzes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The data used is 297 married women in Cheongdo-gun, which has the lowest TFR compared with other rural areas, and the data is classified as the employed and the non-employed. The results show that the owner of house (+), amount of assets (+), and household income (-)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in the employed, but only household income (-) is so in the non-employed.

차례

- | | |
|--------------------|-------------|
| 1. 서론 | 4. 연구 방법 |
| 2. 선행연구 | 5. 연구 결과 |
| 3. 청도군 출산율 및 저출산정책 | 6. 결론 및 시사점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e-mail: nkim@korea.ac.kr

1.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고, 1997년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공선영 2006),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인 1.30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076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규모 감소(인구구성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저출산 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저출산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프랑스의 경우, 20세기 초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2.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베이비붐 현상을 겪었으나, 그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에는 1.65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김영란 2007). 독일은 1970년대 초반부터 서독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고, 197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40명을 기록하였다(조성혜 2007).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규모는 1871년에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16%를 차지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어 왔다(McDonald 2007).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현상은 많은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2005년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50명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Neyer & Andersson 2008).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구학적인 접근, 경제학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 등을 통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Fiori 외(2013)는 가족구성 및 출산 여부,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복지정책 등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Bacci(2001)는 좀 더 포괄적으로 출산은 생물학적, 이념적, 그리고 물질적 제약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출산결정이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소 단편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Fiori 외 2013). 물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출산율 저하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각국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

지만(이충환·신준섭 2013), 많은 부분이 출산장려금, 산휴수당-기존 임금수준에 대한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등과 같은 일시적인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Gauthier와 Hatzius(1997)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러한 정책들은 유권자들에게 일시적인 환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 본 유럽은 상대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2차례에 걸쳐 내놓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이시원 외 2004),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출산장려정책은 무엇보다도 그 역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가장 많은 예산을 ‘출산장려금정책’에 할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저출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장기적인 비용이 출산의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개인이 많은 현실에서 단순한 출산비용에 대한 지원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배상석 2010).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이충환·신준섭 2013), 출산장려금정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석호원(2011)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정책은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의 출산율 증가에 대한 효과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신효영·방은령 2008; 이충환·신준섭 2013). 손승영(2005)의 심층면접 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가에서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완벽하게 자녀양육을 보조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응답자들의 입장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일회성 정책은 전혀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요인 분석을 수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출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청도군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도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경제학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청도군은 ‘군’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청도군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좁게는 청도군 출산장려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정책 수립 및 방향성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다자녀 출산으로의 유인은 가까운 미래의 출산율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출산율 제고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만 이해되었던 자녀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출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출산 관련 의식(가치관) 요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녀필요성과 인구·경제학적 요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자녀필요성을 포함하는 가치관 변수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가치관 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 분석은 김나영(2011)의 연구에서 실시된 바가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경제학적 요인, 출산 관련 의식(가치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산 관련 의식인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등은 직접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경제학적인 요인은 출산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출산 관련 의식 요인을 매개 요인으로 하여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자녀수 결정에 이들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 매개요인 역할을 하는 출산 관련 의식(가치관)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자녀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써 권용은·김의철(2004)은 자녀가치 개념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고, 나아가 자녀가치와 출산율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들이 정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가치’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인구심리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투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경제적으로 자녀가치를 측정·설명하려고 했으며, 1970년대의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가치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인이 출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매개 요인

임을 보여 주었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권용은·김의철은 1970년대와 2000년대의 3세대 간(청소년-어머니-외할머니)의 자녀가치를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성(性)선호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는 점차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단순한 출산율의 비교보다는 자녀가치 연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자녀관’이라는 용어이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간혹 서로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Hoffman & Hoffman(1973)의 연구에서 자녀관은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대치가치, 자녀의 부담감, 자녀가치 형성 장애 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 요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되었다(권용은·김의철, 2004 재인용). 하지만 이은정 외(2012)에서 ‘자녀관’은 ‘자녀계획과 임신출산’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계획’의 경우,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 다르게는 ‘자녀가치관’이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여, 자녀를 낳아 얻게 되는 부부의 사회적 승인, 경제적 노후의존,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 자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주영희 외 2013).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자녀관’이 ‘자녀가치’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때때로 이는 ‘자녀의 (효용)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김승권 2004; 권용은·김의철, 2004; 김의철 외 2005), 이는 앞서 언급한 권용은·김의철(2004) 연구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자녀를 가짐으로 인한 득실에 관한 것이며, 자녀가 부모를 만족하게 해 주는 욕구로도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김승권(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효용가치의 변화를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저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여 ‘자녀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김태현(2005)의 연구는 가치관의 변화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 보면서 ‘자녀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으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사용함으로써 ‘자녀필요성’ 개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을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치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녀관’을 ‘자녀필요성’으로 한정(限定)하여, 청도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경제학적 요인을 분석해 본다.

3. 청도군 출산율 및 저출산정책

청도군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0년에 0.999명으로 다른 ‘군’단위 지역인 강원 인제군(2.004명), 전남 강진군(2.339명), 전북 진안군(2.410명)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단순히 ‘군’지역들의 평균합계출산율만 보더라도 1.50명으로 청도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역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지역을 보면- 2010년 현재 서울특별시 1.015명, 경기 과천시 1.148명, 강원 강릉시 1.173명 등이고, 모든 ‘시·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00명 이상을 기록하여 청도군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군’단위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시·도’ 단위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청도군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도군의 인구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인구 규모는 1998년 5만 6천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4만 5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약 31%가 감소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이는 전국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약 5.5% 증가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소년(0~14세) 인구 규모이다. 동(同) 기간 청도군의 유소년 인구 규모 증가율은 약 -45%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했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동 기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 증감(=전입-전출)보다 자연적 증감(=사망자수-출생아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청도군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도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며 출산율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2006년 사회적 증감은 -252명, 자연적 증감은 -382명이었고, 2009년에는 각 각 -101명, -346명 수준이었다.

표 1. 중앙정부 및 청도군 저출산 극복 정책 현황

정책명	정책 내용
<중앙정부 사업>	
보육시설미이용아 양육비 지원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63만 원 이하 가정)의 보육 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 지급
산모도우미 지원	월평균 소득 195만 원(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표준서비스 지원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 표준서비스: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예방·관리 등
고운맘카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
불임부부지원	월평균 소득 481만 원(2인가구 기준) 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 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 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청도군 사업>	
임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대상, 풍진검사(3개월 이내), 기형아검사(14~22주 이내) 지원
임부 모성검사(간염 외 4종)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대상, 모성검사(간염 외 4종)
임부 철분제 지원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대상, 임부 1인당 철분제 5회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진료	청도군 내 임신부 대상, 산전기본검사(5종), 초음파, 임신성 당뇨검사 등 지원
출산축하카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의 출산가정 대상, 축하 메시지 및 출산장려사업 안내
신생아 출산용품지원(귀채온계, 기저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 대상, 귀 채온계, 기저귀 지원
유축기 대여	보건소에 등록된 출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정책명	정책 내용
영아 정장제 지원	청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3개월 이상 영아 대상, 정장제 1회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식품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중 영양위험 판정기준 해당자 대상,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 및 상담
유아 영양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의 유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유아(만 2세~입학 전) 대상, 영양제 1회 지원
신생아 및 입양 영아건강보험료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대상, 매월 1인당 3만 원 이하 5년간 지원, 18세 보장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첫째 30만 원/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대상, 첫째아 30만 원(1회 지원), 둘째아 200만 원(3회 분할 지원), 셋째 이상 300만 원(3회 분할 지원)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새로마지플랜2010』, 대한민국정부, 청도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청도군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12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크게 세 영역(임신, 출산, 양육)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산부인과가 없는 청도군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부들의 산전관리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또한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을 통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첫째아 30만 원(1회 지원), 둘째아 200만 원(3회 분할), 셋째 이상 300만 원(3회 분할)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관련 정책 시행 후에도 청도군의 출산율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저출산 극복 정책 시행 이듬해인 2008년에는 0.902명을 기록하면서 정책 시행 전인 2006년의 0.984명, 2007년의 1.228 수준보다 오히려 그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고, 2009년에 1.003, 2010년에 0.999 등을 기록하면서 합계출산율 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군’단위 지역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청도군의 출산율 하락 추세 개선을 위한 요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닐 것이다.

4.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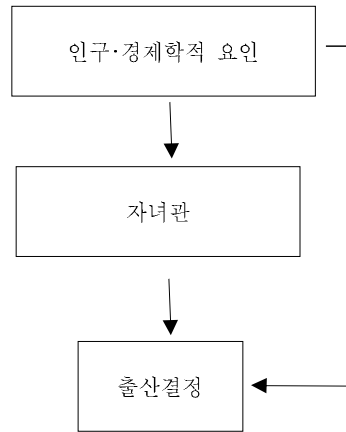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청도군과 함께 실시한 ‘2010년 출산행태와 정책욕구’인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한 설문내용²을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사원이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수집한 응답으로 구축되었다. 방문조사 대상은 20~44세 기혼여성 297명이었으며, 부적절한 대상이나 응답이 미흡한 자료 등을 제외한 26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다.³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자녀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자녀가치’ 개념 모델에는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인구적요인, 심리·사회적 근거, 그리고 자녀의 가치를 포함하였다. 이들 요인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이 개념 모델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며, 본 연구는 이 관계도에서 인구·경제학적 요인의 자녀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인구·경제학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매개 요인의 역할을 하는 가치관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경제학적 요인 및 가치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보다는 -가치관련 변수인- 자녀관에 어떠한 인구·경제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 때 분석 대상인 자녀관은 진미정·정혜은(2010)에서 자녀관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사용된 것과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김승권(2004), 김태현(2005)의 연구에 기초하여 ‘자녀필요성’을 자녀관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2 기본사항(출생연월, 교육 정도, 본인과 남편의 경제활동 상태 등), 출산 및 양육 관련 사항(자녀수, 월평균 지출 보육비, 향후 출산계획 등), 자녀관(자녀 필요성 등), 청도군 특수성을 감안한 지출 및 저축 상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 시점인 2010년 이후에도 저출산 극복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본 출산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2008년과 2010년 사이 출산율의 성장률은 10.75%였고, 2010년과 2012년 사이 출산율의 성장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인 8.9%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 인구동향 모두 2010년 조사 시점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림 1. 가치요인과 출산결정 개념모델



또한 본 연구는 취업 여부에 따른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을 취업/비취업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기회 증가는 자녀양육의 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며, 이는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여성의 취업여부는 자녀수뿐만 아니라 자녀필요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Cleland·Wilson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자녀필요성’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는데, 선택지가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재구성하여 아래 로짓모델(logit model)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Garcia et al. 1995; Gujarati 2011).

$$(1) \quad P_i = E(y_i = 1 | x_i) = \frac{\exp(Z_i)}{1 + \exp(Z_i)}, \quad 0 < P_i < 1.$$

P_i 는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을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2) \quad Z_i = \beta_0 + \sum_{j=1}^n \beta_j x_{ij}, \quad -\infty < Z_i < \infty.$$

x_j 는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 수, 가구소득,

주택 관련 사항, 자산수준(저축성 예금 혹은 보험),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 여부 등이다.

$$(3) \quad L_i = \ln\left(\frac{P_i}{1-P_i}\right) = Z_i.$$

또한 $\frac{P_i}{1-P_i}$ 는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에 대한 odds ratio로, 이는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과 그렇지 않은 확률 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에 로그를 취한 L_i 를 로짓(logit)이라고 하므로 식 (3)은 로짓모델(logit model)이 된다.

5.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35~44세 응답자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20~34세 응답자는 24.5%였다. 따라서 출산율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령적 조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재학 이상자가 45.3%를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은 201~300만 원 수준이 3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35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는 전체 약 79%를 차지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0만 원 이하 수준의 저축성 예금이나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수가 약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 71.3%로 비취업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보면 취업상태인 응답자의 경우 농업·어업종사자가 16.6%, 판매/서비스/기능/단순노무종사자가 28.9%, 기타 직종 종사자가 28.9%를 차지하였다. 취업상태인 응답자 배우자의 경우를 보면, 농업·어업종사자는 21.9%, 사무종사자가 24.6%, 기능/단순노무종사자가 24.6%였다. 마지막으로 친정부모임 혹은 시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는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상관관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 가구소득, 취업 여부(배우자) 등의 변수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자녀필요성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배우자)는 자녀필요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자녀필요성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구소득 및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변수는 자녀필요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비율)	구분	사례수(비율)
연령		주택 관련 사항	
20~29세	14(5.3)	자가	206(78.9)
30~34세	51(19.2)	전세(월세없음)	27(10.3)
35~39세	98(37.0)	보증금 있는 월세	15(5.7)
40~44세	102(38.5)	보증금 없는 월세	3(1.1)
계	264	기타	10(3.8)
평균(SD)	39(5.3)	계	261
교육수준		저축성 예금 혹은 보험	
중졸 이하	10(3.8)	50만원 이하	53(22.8)
고졸	135(50.9)	50~100만원	77(33.0)
대학 재학 이상	120(45.3)	101~200만원	63(27.0)
계	265	201~1000만원	26(11.2)
		1000만원 초과	14(6.0)
가구소득		계	233
200만원 이하	46(17.4)	평균(SD)	245(701.7)
201~300만원	88(33.2)	수입 있는 일 하고 있는지 여부 (본인)	
301~400만원	48(18.1)	하고있음	189(71.3)
400만원 초과	52 (19.6)	하지않고있음	75(28.3)
계	265	계	265
평균(SD)	359(190.8)	수입 있는 일 하고 있는지 여부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수		하고있음	164(87.7)
1~2명	45(17.0)	하지않고있음	23(12.3)
3~4명	142(53.8)	계	187
5~6명	61(23.1)	직종(취업자 본인)	
7명 이상	16(6.1)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48(25.7)
계	264	판매/서비스/기능/단순노무종사자	54(28.9)
평균(SD)	4.1(1.6)	농림어업종사자	31(16.6)
배우자의 형제자매수		기타	54(28.9)
1~2명	24(12.8)	계	187
3~4명	100(53.5)	직종(배우자)	
5~6명	50(26.7)	관리자/전문가	28(15.0)
7명 이상	13(6.9)	사무종사자	46(24.6)
계	187	판매/서비스종사자	26(13.9)
평균(SD)	4.0(1.4)	농림어업종사자	41(21.9)
		기능/단순노무종사자	46(24.6)
		계	187
		친정/시부모님 동거 여부	
		예	60(26.4)
		아니오	162(71.4)
		돌아가심	5(2.2)
		계	227

주: 일부 변수의 경우 무응답이 있으며,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10, 「청도군 인구정책에 관한 주민욕구조사」.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자녀 필요성	연령	교육 수준	주택 소유 여부	저축성 예금 혹은 보험	가구 소득	취업 여부 (본인)	취업 여부 (배우자)	부모 동거 여부
자녀 필요성	1	-0.054	0.026	-0.196***	-0.059	0.137*	0.015	0.128*	0.034
연령		1	-0.139*	0.107	-0.023	0.223***	-0.111	0.230***	0.079
교육 수준			1	-0.077	0.045	0.099	-0.030	-0.085	0.118
주택 소유 여부				1	0.016	-0.032	0.133*	-0.077	-0.155**
저축성 예금 혹은 보험					1	0.151**	0.097	-0.015	-0.108
가구 소득						1	-0.153**	0.036	0.150**
취업 여부 (본인)							1	-0.083	-0.045
취업 여부 (배우자)								1	0.001
부모 동거 여부									1

*,<.1 **,<.05 ***,<.01.

<표 4>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그룹으로 나누어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구·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기간(years of education)으로 측정하였으며, ‘주택 소유 여부’는 자가 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장기적인 비용’이 출산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배상석 2010) 가구소득 외에 자산요인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직종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로 응답자와 배우자의 직종을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표 4. 로짓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자녀의 필요성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111 (0.089)	0.137 (0.103)	0.854* (0.451)	-0.038 (0.113)	-0.083 (0.186)	-0.290 (4.699)
교육수준	-0.092 (0.181)	-0.121 (0.194)	-1.346* (0.794)	0.001 (0.267)	-0.046 (0.333)	0.258 (4.420)
형제자매 수	-0.364 (0.300)	-0.241 (0.298)	-0.622 (0.557)	0.400 (0.555)	0.805 (0.711)	0.829 (11.408)
주택소유 여부 ⁺		1.496* (0.851)	0.386 (1.416)		3.345 (2.124)	8.196 (40.946)
저축성 예금 및 보험액		0.027* (0.016)	0.049** (0.024)		0.000 (0.001)	0.000 (0.012)
가구소득		-0.004** (0.002)	-0.010* (0.005)		-0.004* (0.002)	-0.014 (0.060)
배우자 취업 여부			0.280 (2.546)			10.639 (61.759)
직종(본인)						
관리자/전문가/사무종사자			1.384 (4.460)			
판매/서비스/기능/단순노무종사자			2.827 (4.754)			
농림어업종사자			28.545 (160.5)			
직종(배우자)						
관리자/전문가			10.258* (5.725)			23.171 (98.341)
사무종사자			7.951* (4.709)			14.569 (44.095)
판매/서비스종사자			13.042 (300.7)			5.570 (34.882)
농림어업종사자			-8.006** (3.833)			7.599 (64.574)
배우자 형제자매수			-1.269* (0.751)			-4.146 (8.658)
친정/시부모 동거 여부			-15.638 (151.6)			13.719 (32.361)
상수	1.375 (3.981)	-0.698 (4.843)	22.620 (303.2)	2.746 (5.511)	2.313 (7.144)	-8.719 (102.8)
N	136			51		
R ²	0.042	0.240	0.582	0.026	0.280	0.998

* < .1 ** < .05 *** < .01.

(): 표준오차.

+: 자가 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처리함.

먼저 취업여성의 모델2의 경우를 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축성 예금 및 보험 보유 금액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가 주택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확률에 대한 로짓(odds ratio의 로그값)을 1.496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소득의 증가는 자녀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서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녀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수준은 매우 낮게 분석되었는데(-0.004), 이는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소득을 증대시키지만 출산, 양육, 부모부양, 가사분담 등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며, 특히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승권 2004; 김현숙 외 200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그들의 경제활동에의 참가율을 높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자녀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공선영 2006; Cleland·Wilson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도군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은 자녀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형제·자매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델3의 경우, 응답자의 직종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직종 더미변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관리/전문직종, 사무직종의 경우 기능/단순노무직종의 경우일 때보다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에 대한 로짓을 증가시키는 것, 즉 관리/전문직종사자, 사무직종사자가 기능/단순노무종사자보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림어업직종은 오히려 기능/단순노무직종의 경우보다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에 대한 로짓을 낮추는, 즉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006). 또한 응답자의 형제·자매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수의 한 명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로짓을 1.269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확률이 (형제·자매수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1.269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비취업여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여성과는 달리 가구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취업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 그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0.004). 이는 김현숙 외(2006)의 연구에서 가구경제 및 남편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희망자녀 수는 취업/비취업여성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는데,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의 질 향상을 위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높은 비용을 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자녀필요성의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직종 등을 포함한 모델3의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저출산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인구학적인 접근, 경제학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와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 상승을 위한 방법 모색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출산 여부 혹은 희망(적정) 자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이 출산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자녀필요성’과 같이 보다 일차적인 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출산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분석이 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은 보다 효율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른 ‘군’지역보다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청도군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자녀필요성에 어떤 인구·경제학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방안 모색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조사 대상자를 취업/비취업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취업여성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 자산(+), 가구소득(-)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보다는 배우자의 직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경우 가구소득(-)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가구소득(-)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간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취업여성의 경우 가구소득 외에도 주택 소유 여부와 자산수준(저축성 예금 및 보험)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영향이다. 물론 취업여성에 한해서 나타난 결과이지만 기혼취업여성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을 알게된 것은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즉,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이 -많은 부분을- 일회성에 그치는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는 청도군에서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청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에 대한 (지원 규모면에서) 대표적인 재정적 지원을 보면,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첫째아 출산에 30만 원을 1회 지원하고, 둘째아 출산에 200만 원을 3회 분할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300만 원을 3회에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청도군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0.902, 2009년에 1.003, 2010년에 0.999 등에 그침에 따라 그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1.00명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추이로 미루어 보면, 청도군에서 실시한 -대부분 일회성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출산 관련 정책들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개인들이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할 때, 주택 소유, 예금 및 보험과 같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자산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직종에 있어서도 내·외생적 불확실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림어업종사자가(이태호 2002) 다른 직종사자들과는 달리 자녀필요성에 부정적인 확률이 높은 결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는 과거와는 달리 부모들이 자녀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교육을 비롯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 높은 비용을 예상하여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됨으로써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은 감소하는 대신 경제적 비용인식이 증대한 것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재인용). 하지만 농촌지역의 소득 수준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이 1995년 95.7%에서 2011년 59.1%로 하락하였고, 농가의 농업의존도도 1995년 48%에서 2011년 29%까지 감소하였다(윤영석 외 2013).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장기적 재정안정

을 줄 수 있는 자산형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거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또한 늦어짐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 및 돌봄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도 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자녀가 성장한 후 부모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녀가 부모들의 노후를 돌봐 줄 것이라는 -즉, 노후보장으로서 자녀의 역할- 기대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모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자산 요인의 영향이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고안함에 있어서 단순히 ‘출산’ 문제로 국한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회·경제 전반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가계지출에 있어 장기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자녀교육비, 주거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보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같은 청년세대의 직업·소득안정을 위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의 소득안정 및 보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국민연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제공 등을 통하여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윤영석 외 2013).

청도군과 같은 초저출산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관심 지역으로 설정하여 출산장려정책을 구축할 때 차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부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자녀필요성은 개인적 가치관이지만 정부차원의 개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재정적 안정화를 지원할 정책 수립이 행해진다면 이는 분명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우선 분석에 사용된 설문 조사대상이 기혼여성에만 국한되어 미혼여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송헌재(2012)의 연구는 출산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 그리고 첫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행과정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출산율이 매우 낮은 특정 지역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겠지만- 초저출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혼 및 기혼여성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비취업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한 요인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수행하지 못한 인구·경제학적 요인, 결혼 및 자녀관 등을 포함하는 가치관 요인 등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경로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연구의 확장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9권. pp. 119-149.
- 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제13권 제1호. pp. 211-226.
- 김나영. 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6호. pp. 5-24.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pp. 1-34.
- 김영란. “프랑스법이 한국 여성법 분야에 미친 영향.” 「한국프랑스학회 2007년 추계학술발표회」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김의철, 박영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제1호. pp. 109-142.
- 김태현.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4월호 pp. 17-24.
-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배상석. 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4호. pp. 273-298.
- 석호원. 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pp. 143-180.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문화」 제17권 제2호. pp. 285-316.
- 송헌재. 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pp. 51-78.
- 신효영, 방은령. 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4호. pp. 205-227.
- 윤영석, 이병훈, 박준기. 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pp. 33-51.

- 이시원, 김영기, 이성진, 하상근. 2004. “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 pp. 205-229.
- 이은정, 강영식, 박정환. 2012. “예비부모의 부모역할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 1,566-1,573.
- 이충환, 신준섭.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pp. 97-124.
- 이태호. 2002. “농가소득안정정책의 방향.” 「계간농정연구」 제4호. pp. 51-82.
- 조성혜. 2007.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pp. 561-592.
-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2013.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9): 267-278.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pp. 31-51.
- Bacci, M.L. 2001. “Comment: Desired Family Size and the Future Course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pp. 282-289. Supplement: Global Fertility Transition: .
- Cleland, J. and C. Wilson. 1987. “Demand Theorie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An Iconoclastic View.” *Populations Studies: A Journal of Demography*. vol. 41, pp. 5-30.
- Fiori, F., F. Rinesi, A. Pinnelli, and S. Prati. 2013. “Economic Insecurity and the Fertility Intentions of Italian Women with One Child.”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32, pp. 373-413.
- Garcia, C.V., P.M. Woodard, S.J. Titus, W.L. Adamowicz, and B.S. Lee. 1995. “A Logit Model for Predicting the Daily Occurrence of Human Caused Forest F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Wildland Fire*. vol. 5, no. 2, pp. 101-111.
- Gauthier, A., and J.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vol. 51, pp. 295-306.
- Gujarati, D. 2011. *Econometrics by Example*. Palgrave Macmillan.
- McDonald, P. 2007. “Low Fertility and Policy.” *Ageing Horizons*. vol. 7, pp. 22-27.
- Neyer, G. and G. Andersson. 2008. “Consequences of Family Policies on Childbearing Behavior: Effects or Artif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4, no. 4, pp. 699-724.

원고 접수일: 2014년 07월 30일
원고 심사일: 2014년 08월 04일
심사 완료일: 2014년 09월 15일